

청주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단548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현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2019.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2019. 9. 23. 접수 제979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E은 2018. 4. 4. C에게 2,000만 원을 기간만료일 2023. 4. 4., 이율 연 20.9%, 연체이율 연 2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주)E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구 상호: F(주))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58494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 29.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1. 2. 24. 확정되었다.

다. C은 부친인 G이 1993. 2. 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을 상속하였는데, 2019. 9. 23.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동생인 피고에게 2019. 9. 1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이 사건 토지지분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584941 판결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은 2001년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남편 H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07년경 및 2014. 1. 13.경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지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명의 반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하다가 2019. 9. 2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증여한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에게는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자신의 재산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증여한 것을 두고 C의 책임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C은 부친인 G이 1993. 2. 3. 사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87조 본문에 따라 상속에 따른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은 C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고, 이 사건 토지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것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직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도 이 사건 증여로써 책임재산인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권리가 처분된 것은 매한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C의 적극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